

대법원 2023. 2. 2 선고 2018다232874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대법원 2023. 2. 2 선고 2018다232874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4. 13 선고 2017나25545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6. 22 선고 2015가단113683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A

피고, 상고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의 담당변호사 박종익

판결선고 2023. 2. 2.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4. 13. 선고 2017나2554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E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의신탁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명의신탁약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오석준, 대법관 안철상, 주 심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 이흥구